

## LG 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행동규범

주식회사 LG 에너지솔루션 및 그 자회사(LG 에너지솔루션의 지배력을 보유한 해외법인)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배터리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LG 에너지솔루션의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LG 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LG 에너지솔루션은 협력회사가 모든 국제규범 및 기준과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아울러 하위 공급망 협력회사에도 본 행동규범 조항에 준하는 내용을 전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령상 내용이 상충될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및/또는 외부 심사원)은 협력회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협력회사는 환경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sup>1</sup>과 LG 에너지솔루션 정책<sup>2</sup>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아래 사항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인권 및 노동

1.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청소년 노동 또한 최소 근로 연령과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며, 근로자의 자국 언어로 명확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용과 승진, 보상, 교육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과 그에 따른 표현, 연령, 인종, 국적, 민족성, 종교 및 정치와 이에 대한 신념, 노조활동, 장애 및 신체적 조건(질병의 유무 포함), 임신 및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및 그 밖에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차이에

<sup>1</sup> 다음의 기준들을 의미함 (단, 이에 한정하지 않음): (a) UN 글로벌콤팩트 10 대원칙, (b) UNEP 제품의 사회생활 주기 평가 지침, (c)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특히 COP VIII/28 -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영향평가에 관한 자발적지침), (d) UN 파리협정, (e) 기본 원칙 및 업무상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정의된 기본 ILO 협약, (f) 기타 EU 및 회원국을 구속하는 국제 환경협약, (g) 국제인권조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포함), (h)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sup>2</sup> 글로벌인권노동정책, 글로벌환경정책,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예방 정책, 글로벌안전보건정책, ISO37301 인증규격에 따른 준법경영·부패방지 경영시스템, LG 윤리규범, LGES 준법지침서, 책임있는 소싱 정책, 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 등을 포함한 LG 에너지솔루션 정책

다른 차별을 일절 금지하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양성 존중,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공정성 원칙,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포용성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4.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5. 여성, 원주민, 소수자 및 기타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모든 원재료 추출 및 가공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야 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 인지 동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6.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 및 일수, 최저 임금, 복리후생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에 근거한 연장근로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7.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노조 창립 등)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차별,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 기업 윤리

1. 모든 비즈니스 상호작용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 윤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돈세탁, 갈취, 경쟁 제한 행위 및 이해 상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금융과 관련된 법을 존중하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 또는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수수료 및 로열티의 미지급 수단이 포함됩니다. 이 금지 사항은 제 3 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을 획득 및 유지하거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약속, 제공, 허가 또는 수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회계장부 및 사내 시스템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노동, 안전 보건, 환경 관행, 사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준법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본 행동규범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공급망 내에서 기록의 위조 혹은 조건이나 관행에 따른 허위 진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4.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 및 국제 무역 금수(禁輸) 및 제재를 준수해야 하며, 제재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LG 에너지솔루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출된 부패 위험 내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협력회사 실사 및/또는 협력회사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보건

1.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주거지를 제공할 경우)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활동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이 현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환경의 지속가능성

1. 모든 필수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물질, 폐기물/잔류물 및 폐수, 온실가스(GHG) 배출, 토양 오염 및 침식, 토지 사용 및 열화, 물 소비 및 수질오염(해저 및 해양환경 포함),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손상, 소음 및 진동, 에너지 사용, 주변 환경 및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환경, 기후변화 및 보건 등에 관한 모든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 요령 (수정되거나 갱신되는 내용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생산, 제품 및 운송 등을 포함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및 해당 평가를 뒷받침하는 환경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요청 시 해당 전과정평가 결과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전력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GHG) 배출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LG 에너지솔루션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협력하여야 합니다.
4. 지역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공간, 문화, 생물 다양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책임있는 구매

1. 심각한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전쟁 범죄 또는 기타 국제 인도주의적 법률 위반 및 이에 반하는 비윤리적 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 등"(별첨 1 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LG 에너지솔루션이 승인한 공급상으로부터 관련 광물 등을 구매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하위 공급망(Upstream supply chain) 내 공급상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신규 공급상에

대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공급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LG 에너지솔루션에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3. 관련 광물 등의 채굴, 가공 과정에 존재하는 공급망 위험을 식별, 완화, 해결하여야 합니다. [별첨 1]에서 정의한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관련 광물 등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실행하여야 하며, ‘분쟁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 (이하, “OECD 실사가이드”)'와 UN 기업인권 이행 지침을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 및 국제 산업 기준에 따라 (별첨 1에서 상세 기술한 바에 따름) 실사 정책을 지속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 환경, 안전 보건, 기업 윤리, 공급망 경영시스템 관련하여 LG 에너지솔루션의 본 행동규범, 책임있는 소싱 정책<sup>3</sup> 각각에 명시된 내용과 LG 에너지솔루션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급망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OECD 실사가이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련소 또는 정제소에서 처리된 관련 광물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공급상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광물 등의 공급상이 OECD 실사가이드와 지속가능성 기준<sup>4</sup>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협력회사 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해당되는 경우, 협력회사는 IRMA, CMSI, RMAP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5. [별첨 1]에 따른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사정책 및 EU 배터리 규정<sup>5</sup> (이하 “EUBR”) 등 관련 법률, 국제 기준 및 OECD 실사가이드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실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포착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실사와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LG 에너지솔루션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6. 광물의 추출, 운송, 무역, 취급 또는 수출을 통해 비국가 무장 단체 또는 공공/민간 보안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물의 추출, 운송, 무역, 취급 또는 수출을 통한 비국가 무장 단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은 비국가 무장 단체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광물을 조달하고 지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물류 지원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7. 협력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법령 및 규제 준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특히, 협력회사는 하위 공급망 참여자의 성명 및 주소, 원재료 추출에서부터 LG 에너지솔루션에 도착하기까지의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여 LG 에너지솔루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8. 아울러, 원재료의 원산지가 분쟁의 영향을 받는 고위험 지역인 경우, 협력회사는 OECD 실사가이드에 따라 광산의 원산지, 원재료의 통합, 거래 및 가공 장소, 납부된 세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RMI에서 제공하는

<sup>3</sup> 당사 홈페이지 참조

<sup>4</sup> 책임 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이하 “RMI”)의 책임광물보장 절차(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이하 “RMAP”), 책임광산보장제도(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이하 “IRMA”), 채굴 표준 이니셔티브(the Consolidated Mining Standard Initiative, 이하 “CMSI”) 등

<sup>5</sup> Regulation (EU) 2023/1542

분쟁 및 고위험지역 광물 보고양식(CMRT, Conflict Minerals Report Template)에 따른 보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9. 본 행동규범의 책임있는 구매 항목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LG 에너지솔루션의 모든 직간접 손해를 배상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래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조치에는 대체 공급 결정 또는 공급망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 공급망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1. 본 행동규범에서 협력회사에게 요구되는 내용은 글로벌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임을 확인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요구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록의 위조 혹은 관행에 따른 허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LG 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 내의 하위 협력회사 정보(제공 물품, 명칭, 원산지, 주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파악해야 하며, 원자재 수급에서부터 완제품 제공에 이르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제품, 소재 등의 이동에 관한 정보(이하 협력회사 정보와 통칭하여 “공급망 추적 정보”)를 확인/입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3.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급망 추적 정보 및 관련 증빙서류(거래서류, 운송서류, 생산 서류, 입고 서류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청한 기한 내에 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공급망 추적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급망 추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하위 공급망 협력회사를 설득하는 등의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협력회사의 미 협조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추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본 행동규범 또는 공급망 관련 규제 위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망 추적 정보 확보가 가능한 협력회사로 교체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 고충 신고 시스템

1. 협력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실제 악영향과 관련된 우려 사항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고할 수 있는 기밀 및 익명의 신고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충 신고 시스템은 UN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조기 위험 경고·인식 시스템 및 시정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고발자 또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에게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 및 보복금지 정책을 공개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LG 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LG 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행동규범' (이하, '본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주식회사 LG 에너지솔루션 및 그 자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거래하는 협력회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LG 에너지솔루션과 당사 간에 기 체결된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기 체결된 계약 및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 방문(실사 포함)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LG 에너지솔루션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며, LG 에너지솔루션이 본 행동규범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은 규제 당국 및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고객사에게 공급망 관리 및 추적성 확보에 관한 글로벌 규제 준수, 관련 리스크 식별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회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위 공급망 협력회사의 본 행동규범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협력회사의 본 행동규범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하위 협력회사를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당사는 <https://www.lgensol.com/kr/esg-supplychain-management> 에 게시된 본 행동규범이 LG 에너지솔루션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당사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과 본 행동규범(본 서약서 포함) 간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행동규범이 우선합니다.
6.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문서와 기록을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LG 에너지솔루션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     ]년 [     ]월 [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별첨 1] 실사 정책

### 1. 실사 대상

1. 관련 광물 등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흑연 및 위 원재료에 기초한 화합물, 기타 LG 에너지솔루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광물 또는 기타 원재료(광물에 한정되지 아니함)
2. 분쟁 지역      무력 충돌,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 또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해 및 기타 위험이 식별되는 지역<sup>6</sup>
3. 고위험 지역      인권 침해, 환경 피해, 부패, 건강,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정치 불안정 또는 탄압, 취약한 보호시설, 치안 불안정, 시민 기반 시설의 붕괴 및 광범위한 폭력 위험이 있는 지역

### 2. 실사 기준

- 국제인권조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포함)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 정책에 대한 삼자 선언
-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
-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
- 모든 관련 법률(예: EUBR) 및 국제 산업 규범(예: ISO45001, ISO14001, ISO50001, ISO 37001)
- 실사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요구조건

<sup>6</sup> LG 에너지솔루션은 분쟁 지역 목록을 결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 목록(예: 미국 도드 프랭크법 1502 조, 규정 2017/821)에 따른 분쟁 영향을 받는 고위험 지역 목록, 거버넌스, 부패, 인간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확립된 지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목록은 요청 시 LG 에너지솔루션의 재량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광물을 위한 OECD 실사가이드 -5 단계 프레임]

번호	단계	내용
1	강력한 회사 경영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 정책 및 시스템 구축 (OECD 실사가이드 Annex II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식별</li> <li>- 리스크 예방 및 완화</li> <li>- 공급망 실사에 대한 제 3자의 검증 또는 검사(audit)</li> <li>- 관련 리스크 보고를 위한 장치</li> </ul> </li> <li>• 향상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에 기하여 OECD 실사가이드 및 본 행동규범과 일관된 실사 정책의 수립, 그와 관련된 정보 완전성(integrity)을 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 수행 협력회사 포함 이해관계자에 실사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를 전달 (계약서 내 관련 조항 포함)</li> <li>• 공급망 이력관리</li> </ul>
2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리스크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어도 1년 1회 또는 LG 에너지솔루션 요청 시 추가로 실시</li> <li>- 공급망 매핑(mapping)은 관련 광물과 연관된 하위 협력회사에 관한 식별 및 위치 정보, 관련 광물의 모든 원산지 국가 정보를 포함해야 함.</li> <li>- OECD 실사가이드 Annex II 에 근거한 협력회사 리스크 평가</li> <li>- LG 에너지솔루션 및 기타 정보원이 확인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 리스크의 검토 및 조사</li> <li>- LG 에너지솔루션이 요청하는 리스크 매핑과 관련된 정보 수집</li> </ul> </li> </ul>
3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이행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평가들 간의 보고 격차 해소</li> <li>- 해당 공급망 주체들에게 예방, 완화 및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직/간접적 요청</li> <li>- 필요한 공급망/리스크 매핑과 리스크 해소 및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공급망 주체와의 거래 관계 종료</li> <li>-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관리 계획에 대해 고위 경영진(임원급) 보고</li> </ul> </li> </ul>
4	공급망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실사가이드에 근거한 실사 실시 (독립적인 제 3자 기관의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리스크에 대한 제 3자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li> <li>- 리스크 관리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li> <li>- 확인된 검증 또는 검사의 격차에 대비하고 개선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li> <li>- LG 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 3자 검증 및 검사와 관련된 사항 개선</li> </ul> </li> </ul>
5	공급망 실사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결과 공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공급망 전반으로부터 보고를 취합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 정보를 LG 에너지솔루션 또는 공인된 제 3자에 제공</li> <li>- 기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신규 정보 보고</li> </ul> </li> </ul>



**[별첨 2] 'LG 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행동규범' 참고 자료**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본 행동규범을 작성하였으며 추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BA Code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code-of-conduct/>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https://www.ilo.org/international-labour-standards>

ISO 14001, ISO 45001, ISO 37001, ISO37301, ISO50001

[www.iso.org](http://www.iso.or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ww.oecd.org](http://www.oecd.org)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doi.org/10.1787/9789264111110-en](https://doi.org/10.1787/9789264111110-en)

SA8000 and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http://www.sa-intl.org/>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ohchr\\_homepage](https://www.ohchr.org/en/ohchr_homepag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Decision COP VIII/28- Voluntary guidelines on Biodiversity-Inclusive impact assessment

<https://www.cbd.int/doc/decisions/cop-08/cop-08-dec-28-en.doc>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multi/documents/publication/wcms\\_094386.pdf](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multi/documents/publication/wcms_094386.pdf)

UNEP Guidelines for Social Life Cycle Assessment of Products <https://www.unep.org/resources/report/guidelines-social-life-cycle-assessment-products>

Joint Due Diligence Standard for Copper, Lead, Nickel and Zinc

[https://coppermark.org/wp-content/uploads/2020/08/DRAFT\\_Joint-Due-Diligence-Standard\\_Vers27AUG20.pdf](https://coppermark.org/wp-content/uploads/2020/08/DRAFT_Joint-Due-Diligence-Standard_Vers27AUG20.pdf)

RMI -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https://rmi.org/>

IRMA 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https://responsiblemining.net/>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2/oj>

개정 이력

2024년 12월 20일 개정